



제 418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행정청 검사 권한 부여 및 추심제한 대상 채권 조정〉

■ 권성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심 허용	3
2.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한 원행정청의 검사 권한 부여	11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권성동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11.

다. 회 부 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
체이자,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원으로부터 관리, 감독,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개인채무자에
게 대출을 공급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무역보험공사와 같이 금융위원
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존재함. 현행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본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금융회
사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를 해야되는 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
독 권한이 있는 원 행정청도 동 법률과 관련한 감독, 검사를 할 수 없
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의 준수여부 감독을 위한 감독, 검사 권한을 원 행정청
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동 법률의 준수여부와 관

련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또한, 동 법률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을 통한 채권회수가 부적절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추심제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도 제한하고 있음.

동 법률 시행령에서는 양도제한 채권으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규정할 예정인데 이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와 추심이 모두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와 채권금융회사등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

이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양도 제한은 유지하되, 추심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심제한 채권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반복적인 양도는 방지하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추심 허용

☐ 개정안은 양도가 제한되는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추심의 제한) ----- -----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함)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 조정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6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음.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②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③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 ④ 그 밖에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 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등¹⁾이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²⁾하고 있음.

- 「민법」은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하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채권들의 경우 양도되면 채무자의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 양도를 제한한 것임.
-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①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 ②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확인서의 교부가

-
-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 3)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③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④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규정⁴⁾하고 있음.

□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무자를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채권자 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⁶⁾하도록 하고 있음.

- 4)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 5)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 6)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추심에 대해서는 허용하려는 취지임.

○ 이를 위해 개정안은 추심의 제한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기존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채권’에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으로 변경하여,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채권의 추심이 제한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음.

[표 1] 추심의 제한(§14)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호	·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채권	제5호 제외
양도 제한 채권 (§10① 관련)	1.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2.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으로서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채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시행령 §9)	추심 제한 추심 허용
양도 제한 채권 (시행령 §9 관련)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회사 포함) 외의 자에게 양도하려는 채권 2.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한 채무확인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채권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고시에 별도 규정 없음)	추심 허용

제2호	·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한 채무확인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추심 제한
제3호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추심 제한
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제한
시행령 §13 관련	1.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2.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채권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권(감독규정 §7)	추심 제한
감독규정 §7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추심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직접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채권의 양도와 추심을 모두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채무조정 중인 채권⁷⁾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⁸⁾될 가능성이

- 7)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 2. 분할상환 / 3. 이자율 조정 / 4. 상환 유예 /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있음.

-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서민금융법은 채무조정 기한을 규정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양도와 추심이 허용됨.

-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¹⁰⁾과 관련하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¹¹⁾하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¹²⁾,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¹³⁾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이를 포기할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채무가 사라지게 됨.

□ 이와 달리, 양도 제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제10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11)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행령에 양도 제한 채권을 규정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1호에 따라 추심도 함께 제한되므로, 추심은 제한하지 않으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채권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금융위원회는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회사 포함) 외에 양도하려는 경우의 채권’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추심까지 제한하는 것은 채권금융회사등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위의 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회사 포함)에게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가 계속적으로 제한되므로, 추심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 제한되고, 세 번째 양도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이전에 양도받은 채권금융회사등과 달리 추심 자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추심의 제한 대상 채권 중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 제한 채권을 제외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도 제한 대상과 추심 제한 대상을 각각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 제한 채권)를 추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 가지 채권 종류 중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채권·채무관계

가 불분명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추심이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다시 추심 제한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표 2] 추심 제한 대상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외할 경우 효과

구 분	양도 제한 대상	개정안 효과
시행령 §9 1.	· 세 차례 이상 양도된 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회사 포함) 외의 자에게 양도하려는 채권	추심 허용
시행령 §9 2.	·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한 채무확인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추심 제한 대상 유지 (법 제14조제2호에 규정)
시행령 §9 3.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채권	추심 허용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4호¹⁴⁾, 시행령 제13조제6호¹⁵⁾에 근거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시행령 제9조제3호의 채권을 추심 제한 대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14)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15)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2.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한 원행정청의 검사 권한 부여

□ 개정안은 채권추심회사등 중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행정청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이 개인 채무자보호법 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소관 행정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4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제41조의2(감독·검사 등에 관한 특례)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1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⑦ ----- -----

현행	개정안
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⑧ ~ ⑩ (생략) <u><신설></u> <u><신설></u>	----- ----- ----- -----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1. ~ 5.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u>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u> 1.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2. 제6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 3. <u>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u> <u>제42조의2(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특례)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한다.</u>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채권추심회사 등의 업무나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또한, 채권추심회사등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¹⁷⁾

- 16) 제41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7)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 2.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한편, 금융위원회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및 검사 등의 권한을 갖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위탁 규정¹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권한¹⁹⁾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하고 있음.(표3 참조)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 2.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주의

⑧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 그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8)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제37조(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조치

6.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표 3] 금융위원회 권한의 위탁 현황(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구 분	위탁 대상 기관	수탁기관
1.	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공단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 앙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장관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장관
9.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나. 대부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 이러한 업무의 위탁 관계와 달리,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1조제 5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한 검사 권한은 별도의 위탁 규정이 없어,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가 관리·감독하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권한을 위의 표에 나타난 기준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검사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권한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권한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관리·감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권한 체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과 같이 관리·감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음²⁰⁾.
-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부여하는 것과 현행과 같이 위탁하는 것 모두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게 되나²¹⁾, 현행과 같은 방식이 금융위원회가 채권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추심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 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²²⁾, 과태료 부과 주체도 금융위원회로 규정²³⁾²⁴⁾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 현행법과 같이 채권추심회사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한 체계를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권한을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법률 체계 상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장)의 권한

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제52조(과태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2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원행정청에게 위탁하고 있음.

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탁의 성격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법률에 따라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되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게 한 유사 법률의 입법례²⁵⁾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임.

2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2의2. 법 제23조의9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법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문 의 처
02)6788-5106